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9. 20 선고 2016가단551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8. 30.

판결 선고 2017. 9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도 강릉시 C 대 220평 가운데,
가. 별지 도면 4, 5, 6, 30, 29, 28, 27, 26, 25, 24, 23, 22, 21, 4를 차례로 이은 선 안 '주택' 부분 위에 있는 흑벽 벽돌조 슬레이트 함석 지붕 주택 69㎡, 같은 도면 31, 32, 33, 34, 3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'창고' 부분 위에 있는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8㎡, 같은 도면 37, 38, 35, 36, 37을 차례로 이은 선 안 '화장실' 부분 위에 있는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화장실 4㎡를 각 철거하고,
나. 같은 도면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20, 19, 18, 17, 16, 3을 차례로 이은 선 안 313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1호증, 갑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강릉시 C 대 220평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을 소유한 사실,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20, 19, 18, 17, 16, 3을 차례로 이은 선 안 313㎡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313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판사노태현

별지